

#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임원선출규정

2007. 05. 11 제 정

2016. 09. 01 개 정

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(이하 본 학회라 함) 정관 제11조를 근거로 임원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임원의 구성)

본 학회는 회장 1, 부회장 약간 명, 감사 2인, 사무총장 1인, 운영이사 30명 이내를 포함한 이사 80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.

## 제3조(회장의 선출)

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### 제1항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)

- ① 본 학회의 회장 선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관위"라 함)를 둔다.
- ② 선관위는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.
- ③ 선관위는 회장 후보자의 확정, 선거인 명부의 작성, 투표지의 발송 및 취합, 개표, 당선자의 공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선관위는 당해 선거 업무가 끝나면 그 기능이 종료된다.

제2항(선출시기) 현 임원의 임기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선출한다.

### 제3항(피선거권자의 자격 및 후보자의 확정)

- ① 회장은 최근 6년 이내에 본 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.
- ② 선관위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갖춘 자 전원에게 입후보 여부를 문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.

제 4항(선거권자의 자격) 본 학회의 현 임원으로 한다.

제 5항(선거방법) 선거권자가 투표하며 후보자 중에서 1명을 기명한다.

제 6항(당선자의 확정)

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단, 등록된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한다.

제 7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
제 4조(감사의 선출)

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5조(기타 임원의 선출)

명예회원, 부회장, 사무총장, 운영이사 및 이사는 새로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위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.